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284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

2021. 12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2021. 12.

운영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박정환의원 외 7명
- 발의일자: 2021. 11. 25.
- 회부일자: 2021. 12. 3.
- 검토기간: 2021. 12. 3. ~ 12. 9.(7일간)

### 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전부개정)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3. 개정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정비(안 제1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)
- 나.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(안 제7조의2)
- 다.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정리(안 제7조, 제7조의2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, 제65조, 제66조, 제71조
- 나. 비용추계: 비대상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전부개정)」이 전부개정 되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」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변경,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반영,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을 정리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위반 사항이 없고,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>

# 【 관 련 법령 】

## 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